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1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자원봉사적 성격 및 노인빈곤률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‘임금’을 ‘활동비’로 수정하고 ‘물가상승률 등을 반영’하도록 하였으며, 참여자 보호 주체를 ‘국가’로 명확히 하는 등 안 제23조제2항을 수정함.

수정주요내용

가. “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수정함(안 제23조제2항).

나. 시행일 “2024년 1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수정함(안 부칙).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부칙 중 “2024년 1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0355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3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김 윤 · 황정아
조인철 · 박지혜 · 강준현
박희승 · 박용갑 · 서영석
안태준 · 이재강 · 장철민
박정현 · 임미애 · 이기현
민형배 · 한창민 · 김남희
박해철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,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‘근로’가 아닌 ‘복지수혜’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“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수정하고(안 제23조 제2항), 시행일은 “2024년 1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수정함(안 부칙).

법률 제 호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(생 략)	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 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 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